직장가입자의 종류

# 목차

1. 개요

2. 본문

2-1. 의의

2-2. 직장가입자

2-3. 지역가입자

# 1. 개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 그러나, 일부 예외가 있다.

# 2. 본문

## 2-1. 의의

가입자는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와 함께 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로 성질상 자연인을 말하는데, 건강보험에서는 사회보험적용의 보편성 원칙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유공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가입자가 되도록 하였다. 한편,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은 소득 재분배의 원리에 따라 보험료를 형평성 있게 모든 국민에게 부과해야 하는데, 국민은 다양한 계층으로 혼재되어 있고, 모든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 건강보험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종류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2-2. 직장가입자

모든사업장의근로자 ,사용자와공무원및교직원은직장가입자가된다 (법제6조제 2항).이법제정당시에는보험관리의어려움으로 5인미만의사업장 근로자는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였었으나 ,다른근로자와의보험료부담의형평성문제 ,영세사업장에고용된근로자의복지확대필요성등을고려하여 2000년12월29일법률제6320호에따라 2001년7월1일부터직장가입자적용 대상자를모든사업장의근로자로확대하였다 .

## 2-3.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법제6조 제3항). 따라서 법제6조 제2항 각호 및 영제9조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서 적용 제외되는 자와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한편, 임의계속가입자는 소정의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므로 (법 제110조 제2항) 임의계속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나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 이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한 사람 을 약칭 한 용어로 가입자의 종류는 아니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